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9.

발 의 자 : 이정현 · 허성무 · 박홍배
강준현 · 김우영 · 김 현
손명수 · 정혜경 · 조인철
이주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장애인등편의법”이라 함)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(이하 “높이차이 제거시설”이라 함)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은 각 건축 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설별로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에만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는 건축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

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8조제7호).

법률 제 호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제7호 중 “제8조제1항”을 “제2조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6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8조(점용료 징수의 제한) 도로 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	제68조(점용료 징수의 제한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 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 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	7. ----- ----- ---- <u>제2조제2호</u> ---- ----- ----- -----
8.·9. (생 략)	8.·9. (현행과 같음)